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서영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701

발의연월일: 2022. 2. 8.

발 의 자:서영석·강선우·김수흥

남인순 · 문진석 · 오영환

이용빈 · 이정문 · 조승래

허종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폭력적 행동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고, 가족의 돌봄부담이 과중하여 가정해체, 방임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.

이처럼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, 취미활동, 긴급 돌봄,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·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, 통합돌봄서비스의 효과적 제공을 위하여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(안 제29조의3 및 제35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제3호 중 "제31조에"를 "제29조의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 애인 통합돌봄 지원, 제31조에"로 한다.

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의3(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발달장애인(이하 "최중증 발달장애인"이라 한다)에게 일상생활 훈련, 취미활동, 긴급돌봄, 자립생활 등을 전문적·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(이하 "통합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상,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35조제1항제3호 중 "제29조의2"를 "제29조의2, 제29조의3"으로 한다.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5조의2(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(이하"발달장애인통합돌봄 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장애인통합돌봄 센터의 설치·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·단체에 위 탁할 수 있다.
- ③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
제37조제1항 중 "제29조의2"를 "제29조의2, 제29조의3"으로 한다. 제42조제1호 중 "제29조의2"를 "제29조의2, 제29조의3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복지서비스의 신청) ① 발	제18조(복지서비스의 신청) ①
달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복지	
지원 및 서비스(이하 "복지서	
비스"라 한다), 「사회보장기본	
법」 제3조에 따른 사회보험,	
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스	
스로 신청하여야 한다.	
1. • 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	3
지원, 제27조에 따른 문화·예	
술·여가·체육 활동 등 지원,	
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·	
방과 후 활동 지원, <u>제31조에</u>	제29조의
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	3에 따른 최중증 발달장애인
및 제32조에 따른 휴식지원	통합돌봄 지원, 제31조에
등	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
② ~ ⑦ (생 략)	② ~ ⑦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29조의3(최중증 발달장애인 통
	합돌봄 지원) ① 국가와 지방
	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극
	히 심한 발달장애인(이하 "최

제35조(관계 기관의 협조) ① 지 경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발달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 현황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다. 이 경우 협조 요청을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- 1. 2. (생략)
- 3.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 32조까지에 따른 서비스를 제 공하는 기관
- 4. ~ 13. (생 략)
- ② (생략)
- <신 설>

중증 발달장애인"이라 한다)에
게 일상생활 훈련, 취미활동,
긴급돌봄, 자립생활 등을 전문
적·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
스(이하 "통합돌봄서비스"라 한
다)를 제공할 수 있다.
② 통합돌봄서비스의 지원 대
상,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필
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
<u>정한다.</u>
세35조(관계 기관의 협조) ①
1.・2. (현행과 같음)
3. <u>제29조의2, 제29조의3</u>
4. ~ 13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세35조의2(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

터)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

제37조(서비스의 제공 등) ① 국 제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<u>제29조의</u> 2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 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 조제2호의 사회서비스이용권으 로 제공할 수 있다.

②·③ (생 략)

제42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제42조(벌칙) -----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통합돌봄서비 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 하여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 (이하 "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 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

- 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장애인통 합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 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위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세37조(서비스의	제공	등) ①	
		- <u>제29</u> 조	:의2
제29조의3			

② • ③ (현행과 같음)

하나에	해대	강하는	자는	1년	0]
하의 7	징역	또는	1천만	원 ㅇ	하
의 벌근	급에	처한다			

- 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, 제29조의2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서비스 또는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자
- 2. (생략)

1
제29조의2, 제29조의3
<u>M29442, M29445</u>
2. (현행과 같음)